

각국의 표시결함에 대한 규정

- 우리나라와 미국 -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과 관련된 표시결함은 제품의 설계·제조과정 등에서 제거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제조자는 그 위험성에 의한 사고를 방지·회피할 수 있도록 소비자 측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함이다.

이는 다른 결함보다 피해자가 지시·경고상의 결함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결함을 증명하는 것보다도 비교적 간단하여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클레임 증가가 예상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서서 제품에 대한 지시·경고표시를 충실하고, 안전표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기타의 표시를 하였다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미국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

제1장 판매시 제품결함에 입각한 상업적 제품 판매자의 책임

제1절 제품일반에 적용되는 책임법칙

제2조(결함의 종류)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제조상의 결함을 가지거나 설계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또는 지시나 경고가 부적절하여 결함으로 되는 경우

그 제품은 결함제품이 된다.

㉠ 판매자, 공급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를 제공하였다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지시나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당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품은 부적절한 지시 또는 경고로 인한 결함제품이 된다.

제2절 특수한 제품 또는 제품시장에 적용되는 책임법칙
제6조(결함이 있는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 처방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결함이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예상가능한 피해의 위험에 관한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부적절한 지시 또는 경고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1) 당해 지시 또는 경고에 따라 피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처방자 및 기타 의료제공자

(2) 의료제공자가 당해 지시, 경고에 따라 피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조자가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의 환자

㉣ 처방의약품, 의료기기의 소매업자 및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생긴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공급시점 혹은 그 이전에 소매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인적피해의 원인이 된 경우

제8조(결함 중고품의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중고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함 있는 중고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당해 중고품의 판매자 및 연쇄유통과정에 있어서 피승계인(선행판매자)에 의하여 재제조된 중고품에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결함이 있는 경우

제2장 판매시의 제품결함에 의거하지 않은 상업적 제품 판매자의 책임

제9조(부실표시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제품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매와 관련하여 사기적으로, 과실로 혹은 선의로 당해 제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부실표시한 사람은 당해 부실표시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판매 후 경고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제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 판매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경고를 제공하였을 경우 제품의 판매 또는 공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판매자가 제품의 판매 후에 경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판매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후에 경고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① 판매자가 제품에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② 경고를 제공받아야 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그들이 피해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③ 경고를 제공받아야 할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전달되고 그 경고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

④ 피해의 위험이 경고를 제공하는 부담을 정당화할 만큼 클 것

제3장 승계자 및 외견상 제조자의 책임

제13조(승계자 자신이 판매 후 경고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승계자의 책임) ㉠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승계회사 또는 단체의 재산을 취득한 승계회사 또는 단체는 제12조에 의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승계자가 판매 또는 공급한 제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승계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틀림 없이 경고를 제공하는 경우

㉡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경고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① 승계사업자가 당해 제품에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② 경고를 제공받아야 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그들이 피해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③ 경고를 제공받아야 할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전달되고 그 경고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

④ 피해의 위험이 경고를 제공하는 부담을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 클 것

<지면관계로 ㉠ 중국, 영국, 캐나다, 독일은 다음호에 게재하겠습니다.>

